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www.namwon.go.kr

14	기관의 장
인	
람	

제 49 호

2015. 5.18(월)

고 7	
<u>о</u> т	

회					
람					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공고 제2015 - 652호

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5월 18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인터넷을 활용하여 남원시정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소통을 통하여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 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- 나. 인터넷 홍보활동 활성화와 민원 제기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한 시 민의 참여등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홍보전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 제출 사항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590-701

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 518) 남원시청 홍보전산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03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홍보전산과(☎063-620-60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: 2015. 5. .

제 출 자:남원시장

제안설명자 : 홍보전산과장

1. 제정이유

인터넷을 활용하여 남원시정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소통을 통하여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나. 인터넷 홍보활동 활성화와 민원 제기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한 시민 의 참여등을 규정함 (안 제3조).

다.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 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15. . . ~ 2015. . .(20일간)
 - 결 과:
- 2) 비용추계서: 별첨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남원시정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소통을 통하여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인터넷"이란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.
 - 2. "인터넷 매체"란 인터넷 신문, 인터넷 방송, 블로그, 트위터, 페이스북 등 남원시 홍보를 위한 매개체를 말한다.
 - 3. "인터넷 홍보"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소식을 알리거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남원시 홍보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시민의 참여 등) ①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인터넷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궁금한 사항, 의견 및 시정소식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대상 및 범위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홍보 활동을 하는 법인 (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한정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보

보

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국・도・시정소식 전달과 홍보활동
- 2. 교육 · 문화 · 예술 · 체육 및 생활정보 전달 활동
- 3. 제1호와 제2호의 활동에 따른 남원시민의 의견 수렴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 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- 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(작성대상)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

의	견	제	줄	入 -

1.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의견제출

성명(명칭) 2. 제출자

추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